

대법원 2020. 8. 27 선고 2020다3909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8. 27 선고 2020다39092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4. 9 선고 2019나7171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

피고, 상고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

판결 선고2020. 8. 27.

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나7171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안철상

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노정희

주심대법관김상환